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유예시기 판단기준 시달

1. 관련: 산업보건과-4968(2020. 11. 18.) "코로나19 관련 「근로자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」('20.11.18.)」
2. 2021.2.15.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(수도권 2.5단계 → 2단계,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→ 1.5단계)에 따른 '20년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시기에 대해 지방관서별 의견이 상이하여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시달합니다.

- 다음 -

【해당 내용: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(2~3쪽 본문 중 발췌)】

- '20. 6. 15. 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('20.9.10.~10.11.)는(중략) '21. 3.31.까지 실시
- 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'21. 3. 31.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

【판단 기준】

<수도권 외> 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인 '21. 5.14.까지 실시

<수도권> 근로자 유예희망 시 계속 유예('21. 3. 31.까지 아님)

- 근로자가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'21. 3.31.까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,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기한 연장을 수도권 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'21. 5.14.까지 실시

※ ■ (1~1.5단계)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, ■ (2단계) 근로자 유예희망시 건강진단 유예

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지방관서(산재예방지도과)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, 고객상담센터



행정사무관 오세창 기술서기관 전결2021.4.1. 김정연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과-1534 (2021. 4. 1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(어진 / 동, 정부세종청사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744 팩스번호 044-202-8093 / oscss@korea.kr / 비공개(7)